

특별조사 결과 조치사항

기관명	지적 및 조치 요구
문화체육 관광부	<p>< 금품등 수수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직무관련자(A단장)로부터 저녁식사, 유흥, 숙박 등 향응과 편의를 제공받았고, 국립오페라단(B팀장)으로부터 지도감독의 업무수행 목적 외의 공연관람권(3매)을 제공 받음 ☞ 직무관련자로부터 3회에 걸쳐 총 63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A 前 공연과 서기관,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1조(청렴의 의무) 위반으로 ‘경징계’이상(징계부가금 의결) 요구
국립오페라단	<p>< 공연관람권 제공 관련 업무 소홀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립오페라단에서는 '18.4월 <○○> 관람권 2매, '18년 12월 <□□□> 관람권 1매 등 2차례에 걸쳐 총 38만원 상당의 업무수행 목적 외 공연관람권(3매)을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○○○○○○과 직원에게 제공*함 ☞ 국립오페라단에서 제공한 공연관람권이 일부 지도감독 목적 외로 사용되는 등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국립오페라단에 ‘기관주의’ 조치